

第5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審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日 時 1991年8月21日(水) 14時

場 所 貴賓待機室

議事日程

1. '91年度 共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案件

1. '91年度 共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面

(14時 開議)

○委員長 李憲九 在籍委員 6名 中 出席委員 6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91年度 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審査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91年度 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91年度 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審査 特別委員會 議事日程은 會議 規則 第48條에 따라 委員長과 幹事가 協議하여 特別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數를 정하게 되어 있어 議事日程表를 委員님 여러분께 미리 配布해 드렸습니다.

'91年度 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案審査는 8月 23日 확정하여 8月 24日 第2次 本會議에서 報告하게 됩니다. 會議 進行은 趣旨說明을 듣고 質疑와 答辯을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趣旨說明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許萬攝 提案說明에 대해서 委員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릴 案件은 公平洞의 再開發 事業地區 안에 있는 원래의 그것이 도로였었는데 한 1.7평 정도 가까이 되는 땅의 賣却이고, 또 하나는 平倉洞의 그것이 한 2필지에 해당되는 땅인데 그것이 한 11평 가까이 되고 원래는 하천 부지로 地目이 되어 있던 것이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雜種地로 된 事案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再開發 事業地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事業이 잘 되어 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賣却이 불가피하고 平倉洞 문제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民願事項으로 賣却을 해달라고 申請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地域에 대한 承認을 要請한 事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公平洞 문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니 賣却을 承認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平倉洞 문제는 개인 民願이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원가 賣却 여부에 대해서 回信을 해줘야 할 責務가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판단을 해가지고 賣却의 時期가 좀 이르다,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會議 規則 第52條 第2項의 規定에 의거 質疑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해서 進行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委員 말씀하십시오.

○玄孝善委員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公平洞 件을 보니까 말입니다. 화신 뒷쪽을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쪽의 땅이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제 와서 이 問題가 나오는 겁니까?

○財務局長 許萬攝 이 문제가 원래는 本廳 事業입니다. 再開發 事業이 本廳 事業인데 그 뒤에 議會가 4月 15일부터 構成되어 發足이 되었으니까 그때 이것도 本廳의 관

理하에 市長님의 承認을 받던 것이 議會의 承認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本廳과 區廳간의 業務 連繫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가 承認을 받을 수 있도록 要請한 것 같습니다.

○玄孝善委員 제가 이 地域을 보니까 이제 議會에 上程된 마당에 골조공사가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財務局長 許萬攝 그 당시 本廳과 區廳간에 業務 協助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結果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參考를 하겠습니다.

○玄孝善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번에도 말씀하신 문제가 한 번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 區議會에서 도저히 못 팔겠으니까 헐라고 하면 區廳에서 이걸 責任을 지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許萬攝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은 是認을 합니다.

○玄孝善委員 잘못을 是認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요.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千相旭委員 委員席에서—"우리가 區行政에 어떤 協助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한 가지 남득이 안 가는 것이 이 公平洞의 建築許可가 이미 났지요? 建築許可가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면 建築許可가 안 나오는데 이 안에 私有地라든가 하면 建築許可가 承認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建築許可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물론 局長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마는 建築許可가 나오게 된 경위를 우리가 한 번 따져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再發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玄孝善委員님 말씀하세요.

○玄孝善委員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三星生命 전에 다른 會社가 이

를 맡았었습니다. 한보회사였지요. 먼저 許可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財政상의 문제때문에 한보가 못 하니까 三星生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市廳이 북마전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財務局長님을 공박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市 行政이 이러는데 과거부터 오죽하면 북마전이라고 하겠습니까?

○財務局長 許萬攝 제가 參考의으로 사실상 모든 것이 先決이 되고 그 다음에 建築許可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보면 都市計画法 第60條의 規定에 보면 國公유재산의 施行者에 대한 讓渡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두번째 開發예정구역 안에 있는 國公유재산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國有財産입니다. 總事業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써 이를 讓渡할 수 있다는 條項이 있습니다. 讓渡할 의사가 없으면 許可 전에 建築許可 이전에 建築許可가 나와 順序가 아니겠습니까?

委員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런데 사실 이것도 공무원의 안일주의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의 결재를 받으려고 이 案件을 내놓은 것이지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局長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이미 施行을 해서 그것도 再開發을 하려면 상당한 期間이 필요합니다. 이 公平洞 조그마한 땅을 市有로 하든지 區有로 하든지 자기 財産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再開發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서류를 떼어 보니까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業務 所管이 區廳이던 區廳에다가 얘기했을 것인데 局長님이 아시게 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아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共有財産 審査委員會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도로로 되기 전이니까 6月달에 地目變更이 되었으니까 地目變更을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審議하고 계속 檢討하고 建築許可를 내줄 때는 所管이 아니었으니까 모르

고 해줬다는 말입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그때는 땅 자체가 도로 부지였으니까요……

○**玄孝善委員** 지금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되었던 所有地가 되었던 간에 자기의 것이 아니면 먼저 通報를 하고 양해를 얻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本廳이나 區廳이나 시행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뜯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委員長 李憲九**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 建物을 지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현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어진다면 우리가 讓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로라고 했을 때 이걸 완전히 公務員의 유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委員 말씀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1.7평이기 때문에 建築設計를 했을 때 이곳에다가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처음에 1.7평에 대해서 도로 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는 여기서 이 평수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도로 부지가 되어 있어 이렇다 보니 이것이 자연 문제가 되어 審査를 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시행 그 自體가 누구의 잘못이 있진 간에 잘못했는데 現在는 이걸로 인해서 이것을 안 판다고 했을 때 또, 여러 체면도 있고 어떠한 行政의인 면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現在 여기의 땅값 자체도 너무 단가가 싸고……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玄孝善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玄孝善委員** 문제는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價格은 區廳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자꾸 그냥 넘어가주면 말이 안됩니다. 問題가 있어요. 만일 이게 개인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지으려고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됩니다. 許可가 안 납니다. 大企業들이나 재력자들이

장난을 하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千相旭委員 말씀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우리가 각 地域의 再開發事業을 보면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住宅 建立이 鍾路區全體에 각 地域마다 計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許可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建築許可가 안 나올텐데 어떻게 나느냐? 許可과 정의 경위를 알아봐야 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제가 알기에는 개인財産이 모두 등기가 되어 있고 또 全國이 컴퓨터 電算으로 入力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都市計劃法 第29條에 보니까 施行者는 도시 구역 안에서 都市計劃事業에 필요한 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대한 所有權이 외에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사용이나 수용이나 하는 것은 所有權者에게 먼저 許可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또 우리가 法的으로 讓渡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니까 먼저 짓고 보자 이러한 생각에서……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芮相浩委員 말씀하십시오.

○**芮相浩委員**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게 어찌서 建築許可가 나느냐 이 조그마한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建築許可의 進行上 문제가 있을텐데 그게 建築許可가 나 가지고 작년부터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建築許可가 어떻게 났는지 그럴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局長님이 남의 재산이 여기 있는데 再開發地域 같은 경우 통보도 안 해주고 民主社會에서 私有財産을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진 간에 지금은 안됩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委員님들이 지적한 事項

이 당연한 것입니다. 建築許可가 어떻게 났는가 내역을 보면 곧 밝혀지겠지요. 과거의 행정·선례가 法的으로 개인의 財産에 대해서 讓渡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芮相浩委員 再開發地域 안에 있는 無許可建物の 建築許可가 어떻게 났는가 하는 경위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알고 고서 그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이런 不法의인 하나의 모델을 鍾路區議會가 地方自治制 時代に 맞춰 가지고 처음 特別委員會를 열어 調査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을 기본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參考 資料를 歷史의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짓고 있으니까 양보해 준다 하더라도 양보야 해 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의 基本 方針을 우리가 徹頭徹尾하게 파헤치고 난 나중에 양보를 하든 그에 대한 상응의 대가로서 돈을 주든가 상대방의 재의를 받을 때도 原則的으로 公務員이 잘못했든지 사업주, 발주자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된 것은 사실이니가 거기에 대한 法的 제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徹頭徹尾한 審査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玄孝善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玄孝善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 위원님이나 委員長님이 여기서 檢討할 것은 拂下해 주는 조건으로 建築許可를 해달라고 하면 서울시와 鍾路區廳에서 안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大企業들이 하니까 區廳 職員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버릇은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建築許可 擔當官을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분한테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고 합시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田永泰委員 局長님은 모르는 사항입니까?

○財務局長 許萬攝 용도변경 자체가 금년도 4월 15일 전에 만일에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議會에 上程할 필요가 없이 되는데 저한테 넘어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6월 며칠날인가 올라왔습니다. 한달 남짓 되었는데 議會가 開院된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承認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市에서 먼저 우리 建設管理局長을 불러 가지고 왜 용도변경 要請을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田永泰委員 都市計画法 第60條의 規定을 보면 開發豫定區域 안의 國有財産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國有財産法 및 지방 재정법 등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方法으로 이를 讓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하는 얘기죠.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玄孝善委員 말씀하십시오.

○玄孝善委員 讓渡할 수 있지요. 讓渡를 해서 이걸 變更해 가지고 합병을 해서 그래서 設計를 해서 許可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금 賣却할 때는 議會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議會에다 上程이 되는데 방금 田委員 말이 그 지적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상 단지 그러한 各種 節次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地域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都市計画法상으로 당연히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후속처리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세요.

○田永泰委員 그것은 一般的인 생각이고 여하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民主的 수용방법이 되기는 하는데 수용도 議會의 承認을 얻고 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委員長 李憲九 그 節次가 빠졌다는 말이죠. 市 行政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市廳에서도 이를 해주었고 지금 우리가 질서 있게 質疑 答辯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討論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시죠.

○田永泰委員 나는 조그마한 땅, 이 땅의 地價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못하게 아까도 내가 말을 했지만 地方自治制가 생긴 이후에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주자, 鍾路區議會에서 제일 첫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도 公務員들이나 大企業들이 이런 횡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델케이스로 분명히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한 번 建設管理局에 알아 봅시다. 建設管理課長을 불러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봅시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그런데 조성되기까지 再開發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玄孝善委員 말씀하세요.

○玄孝善委員 허가낼 때부터 審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할 것은 안하고 서울시에서도 도로부지인 줄 알면서도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어느 建設業者든 이것을 하려면 지적도도 다 떼어보고 다 基本設計 내어보고 나서 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憲九 허가 자체가 안 나오죠.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세요.

○田永泰委員 이런 식으로 하려면 대한민국에 法이 뭐 필요있고 憲法이 뭐가 필요있어요?

○財務局長 許萬攝 許可를 해줬기 때문에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委員長 李憲九 許可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수용하려 든다는 것도……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芮相浩委員님 말씀하세요.

○芮相浩委員 委員長! 그러면 잠깐 停會를 하죠.

○委員長 李憲九 예, 그러면 建設관계관이를 때까지 약 10分間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4時28分 會議中止)

(14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成員이 되었기 때문에 第1次 '91年度 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審查 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地政係長 姜堯遠係長님이 와 계십니다. 委員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芮委員님 말씀하십시오.

○芮相浩委員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件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밟아서 建築許可가 났느냐 우리 區의 財産이 1.7평인가 되는데 이것의 사용승인이 合法的으로 아직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建築은 진행되고 있고 그 許可는 났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것이 처리 안되는 과정에서 建築許可가 났느냐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係長님! 지금 芮相浩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公平洞에 1.7평이라는 땅이 契約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建築許可가 나 가지고 사업시행을 지금 하고 있느냐, 과연 어떤 根據에 의해서 되었느냐 그것을 알아 보려는 말씀이십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建築許可 관계는 本廳 都市再開發課에서 再開發法에 의해서 事業承認을 하고 일단 都市計劃 事業이 再開發 지구로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 法에 의해서 建築許可를 바로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土地所有者의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사업시행자로서 建設部の 承認을 얻어 가지고 그 土地에 대해서 공고하고 공람하는 절차를 밟는데 本廳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게 되

어 있습니다.

土地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田永泰委員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언제 받았어요?

○地政係長 姜堯遠 저희들 서류를 봐가지고는……

'88年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認可가 韓寶에서 三星生命으로 넘어가기 전인 '88年 이전에 事業承認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本廳 再開發課에서 建設部 承認을 얻어 가지고 事業承認資料 지정을 받아 가지고 韓寶에서 三星生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田永泰委員 3年 前 일 아닙니까? 이것이 왜 議會에 上程된 것이냐, 무엇인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賣却承認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賣却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때 83-5번지상의 일부는 대지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관하고 再開發課의 承認과정에서 83.57㎡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土地는 무상 讓渡를 해주되 도로에 대해서 그 때 가건물 비슷하게 도로였지만 그 부분만 사달라 나머지는 양해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시다.

그 때 事業施行 과정에서 무상 讓渡를 하고 事業承認者는 사업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事業하는 과정에서 도로라든가 하천을 新設하게 되고 공원용지를 만든다거나 공용의 청사용지를 만드는 경우 이것은 다시 내가 무상으로 양도를 받은 만큼 다시 무상으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목상으로는 도로였지만 전체面積 83.57㎡, 5.7㎡만 점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물이 여기만 도로 공지를 대지로 보는 이것은 차후에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 땅을 사거라, 이것은 무상으로 못준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으로 못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분할해서 지목변경해서 賣却을 이

행을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게 되면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 돈을 안 받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죠.

○田永泰委員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3年 후인 '91年度 8月달에 와서야 上程되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에 대한 정확한 法的 根據를 내놓으면 우리야 할 말이 없죠.

○地政係長 姜堯遠 이것이 지방재정법 第21條에서 事業施行者가 전부 원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土地所有者가 하는게 아니라 事業施行者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현장에 어떤 물건이 있고 없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쪼개 달라고 했을 때는 事業施行者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할할 때에 현장에 건물이 없어서 분할이 안된다는 조건을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분할용어로서 종전분할이라고 表現하거든요. 그러면 事業施行 당시 現況測量圖에 의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1.7평만큼 그것만큼만 분할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역시 지방재정법 第21條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지방재정법 第21條에 의해서 종전 분할方式으로 1.7평을 분할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도로이지만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再開發 事業지구 내에 도로가 얼마나 돼 있죠?

○地政係長 姜堯遠 사업지구 내역은 全體調査를 해봐야 알겁니다. 事業承認 가운데 전체내역을 조사해 보면 本廳 資料에서 알 수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再開發 事業承認을 해주고 나중에 공익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될터인데 이 부분만 분할을 要請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것입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그 부분만 買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本廳 再開發課에서 承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承認 문제든 무슨 문제든 法에 根據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

는 것 아닙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그때 당시 '87年 1月 21日字 지적공사에서 現況 測量圖를 발급해서 그 部分을 調査해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現況 測量圖에 의해서 그 부분에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거기에는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일부는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千相旭委員 係長님이 答辯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서 도로관제 대지이기 때문에 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洪承台委員 그러면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公平洞 84-5라는 것이 있는데 6호가 1.7평이고 84-5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5호에서 분할된 것이죠? 5호는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5호의 現在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거기서 분할해서 6호가 되어 가지고 5.7㎡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5호는 몇 坪인지 아십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전체가 지금 남아 있는面積이 77.6㎡입니다.

○芮相浩委員 지금 들어보니까 合法的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1.7평에 대해서 사후에 事業施行者가 買入하는 조건으로 建築許可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事業承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再開發 事業施行을 하라고 그랬지……

○芮相浩委員 事業施行만 해주면 建築許可는 관계 없습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建築許可는 별도로 本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都市再開發法 第14條에 보면 지분의 3分の 1, 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소유권이 넘어 오지 않더라도 事業을 착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芮相浩委員 그런데 事業承認을 받고 집을

짓는데 建築許可는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許萬攝 事業承認을 하면 建築許可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田永泰委員 그런데 우리가 建築許可라든지 재개발상식이라든지 하는 專門的인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고 이해도 안 간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이 特別委員會를 구성해서 承認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일의 사후처리가 될 것이냐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이것은 本廳에서 買入을 나중에 事業施行者에게 서울시에서 잔금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鍾路區廳에서 賣却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첫째 건물은 지금 준공을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條件이 충족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事業承認 자체는 나 있지만 事業竣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시죠.

○田永泰委員 내가 하는 소리가 그 말이 그 말인데 땅주인한테 먼저 돈이 10억이 되건 1원이 되건 사서 만들어야지, 지금 事業開發權限으로 再開發權을 수용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건물 노릇을 못한다는 무허가 아닙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無許可죠.

○田永泰議員 우린 承認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아까 내가 局長님 제실 때도 모델케이스로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권한이 있으면 우리들도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이것은 '87年度에 서울시에서 承認을 해준 事項이거든요. 그 때 당시는 土地가 鍾路區廳 땅이 아니라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玄孝善委員 말씀해 주세요.

○玄孝善委員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87年度에 承認을 해줄 때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겠죠.

○地政係長 姜堯遠 事業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玄孝善委員 지금 4年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그런데 그것은 事業者의 어떤 업무상 형편에 의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玄孝善委員 그러면 10年 후에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再開發 事業같은 경우는 10年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6, 7年씩 걸립니다. 준공 전에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준공조건이 충족되면 준공이 가능하거죠.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玄委員님 말씀하시죠.

○玄孝善委員 그러면 저도 反對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芮相浩委員 말씀하시죠.

○芮相浩委員 지금 일반적으로 事業承認이 재개발 승인지구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90% 3분의 2만 同意를 받으면 事業承認이 난다고 하는데 만일 그 3분의 1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그것은 저희들의 業務 밖이거든요. 再開發事業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田委員님 말씀하시죠.

○田永泰委員 再開發 事業을 해서 3분의 2만 同意하고 3분의 1은 同意를 안 해가지고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로는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芮相浩委員 發言하시죠.

○芮相浩委員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가격은 中央土地委員會에 재결 요청을 해서 거기서 決定되는 사항이 決議됩니다.

(「違法이에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千委員님 말씀해 주시죠.

○千相旭委員 再開發 事業 과정에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市有地든 區有地든 간에 도로사용 承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사용승인이 아니라 그것은 무상으로 讓渡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냥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기부채납도 안받고? 區有地든 市有地든 간에?

○地政係長 姜堯遠 區有地든 市有地든 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再開發 事業지구에 공공용지가 있을 경우에, 도로 하천 등이 있을 경우 事業施行者에게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어떤 法的 근거가 있어요?

○地政係長 姜堯遠 再開發法에 無償讓渡하는 規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千相旭委員 再開發法에?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芮委員님 發言해 주시죠.

○芮相浩委員 도로, 하천에 한한 것이죠?

○地政係長 姜堯遠 공공용지라고 表現이 되어 있습니다.

○芮相浩委員 그러니까 대지는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죠. 5.7㎡ 같은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 個人企業이 가령 지정사업자가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私有財産을 자기네 事業承認을 받았다고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地政係長 姜堯遠 그것은 저희들의 業務 밖의 問題니까……

○芮相浩委員 그게 아니라 1.7평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그 수용관계는 다시 그 수용법을 아는 분들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芮相浩委員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극단적으로 우리들이 안 판다고

버티면 事業承認者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나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시
죠.

○田永泰委員 수용을 할 수 있으되 수용권
리가 벌써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事業權利를 쥐버렸는데 지금 係長님 말씀
을 들어 보면 우리한테도 權利는 있다는
소리요, 우리가 이걸 承認을 안해주면 수용
은 할 수 있는데 건축주의 생명인 준공검
사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수용을 해서 소유권 인
정을 받았을 때는 建物竣工도 가능합니다.

○田永泰委員 그러면 인정을 하고 審査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地政係長 姜堯遠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芮委員님 말씀해 주시죠.

○芮相浩委員 그것은 우리 憲法하고 問題가
되는, 私所有財産하고 문제가 되는 얘기니까,
간단히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田永泰委員 發言하시
죠.

○田永泰委員 우리 공유재산 처분 이렇게
못하겠다 해서 大法院까지 수용법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재판제류도 할 수 있는 問題
이고, 가능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千相旭委員 말씀하시
죠.

○千相旭委員 하나만 얘기해 보겠는데 우리
가 行政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協助해
준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委員님들 오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說明하시는 係長님 얘기를 들어 보
니까 그 부분의 도로는 再開發法에 의해서
讓渡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 대신 다른 方
法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方法이 있다고 하
니까 그것은 우리가 調査해 봐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市에서 또는 區에서 뭔가 市有
地나 區有地化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던
끝에 지금 이 公務員들이 고민한 것 같아
요. 근거만 있으면 市有地化해서 區有地化해

서 가급적이면 地方財政을 확보하는 이러한
方法으로 연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예감이
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많은 도로 가
운데서 하필 1.7평에 대한 것만 굳이 불하
신청을 承認을 요청한 것은 여기에 가건물
이 있었기 때문에 가건물이 있으니까 대지
다, 지목변경으로 도로를 대지화한 것입니
다. 대지는 불하를 받아야 하니까, 대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問題가 난게 아닌가 싶어서 市財政
을 확보하기 위한 方法으로 한게 아니냐?
좋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玄孝善委員 말씀하시죠.

○玄孝善委員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사라고 한 것이지, 다 줄려고 하다
가 다 주지 못한 것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芮相浩委員 發言하시
죠.

○芮相浩委員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
습니다만 1.7평에 대한 조치, 말하자면 극
단적인 예를 듭니다만 안 판다고 했을 적
에 1.7평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것이 궁금합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목의 외곽에 있다고
하면 事業計劃 변경을 해가지고 잘라내고
다시 확정시켜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
기에는 그 지적 자체가 가운데 안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박혀 있다 보니까 아마 준
공을 못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게 생각됩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저희들이 알기에는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法院에 일정 金額을 공탁
해 놓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그걸 건축
준공을 해서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그게 아니고 선행절차가
區議會에 承認을 택한 다음에 賣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承認이 안난다고 했을 적
에는 그러한 강제수용은 될 수 없는 것이
지……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田委員長님 發言하시죠.

○田永泰委員 강제수용을 할 것 같으면 特別委員會에 提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地政係長 姜堯遠 강제수용관계 조문은 해당 부서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내가 보기에는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된 단계에서 그래도 되겠느냐, 地方財政法이라든지 이런데서 명시 규정이 되어 있는데 承認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承認 안받는 것을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겠는가, 물론 特別法이 우선합니다. 一般法에 特別法이 우선하고 또 國法보다는 市民法이 우선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特別法이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地政係長 姜堯遠 그 관계는 보상관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再開發法은 特別法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芮相浩委員 말씀하시죠.

○芮相浩委員 이것은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일 극단적으로 1.7평을 안 판다고 했을 적에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그것이 중요한 게 간판인데 지하에 건물이 있고 그게 홍물로 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좋게 보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기회만 어떻게 承認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承台委員 말씀하시죠.

○洪承台委員 지금 質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4의 5호 그것이 지금 보면 180평 정도 돼요. 그 180평 중에서 1평 7홉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러면 84의 5호가 어떠한 도로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1.7평에 대한 것이 진짜 이것을 나중에 정말 먼저 시행을 안하고 나중에 할 수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말씀하시죠.

○田永泰委員 洪委員님 말씀은 500평이건 2,000평이건 坪數는 필요없다는 얘기죠. 도로는 아까 그.....

○洪承台委員 그런데 84의 5호가 무조건 도로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田永泰委員 도로, 하천으로 지적도에 명시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洪承台委員 그 중에서 1.7평만이 대지가 됐다는 얘기죠.

○田永泰委員 그것은 처음부터 대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이 건물이 서있으니까 서울市中에서 요청을 “이것은 대지로 지목변경했습니다, 이것만은 당신네들이 불하로 사라”하는 조건부 承認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洪承台委員 84의5호는 도로가 확실한가요?

○地政係長 姜堯遠 그때 당시부터 지적공사 지목은 도로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玄孝善委員 말씀하시죠.

○玄孝善委員 이것을 판다, 안판다 결정하기 전에 이걸 과연 시행하자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절충을 한 번 해본 다음에 판다, 안판다 結論을 내릴 수 있는 方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忠武路가 땅이 평당 2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화신이 지금 現在 1層 지하를 파고 2層까지 파고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그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안해 봤지만 肉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자 해서 올라온게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이걸 꼭 問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이 가격에 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忠武路에 땅 한 坪에 2억이 넘는데 여기서 1.7평에 1억9,400만원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각각 상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면 그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芮相浩委員 말씀하세

요.

○**芮相浩委員** 아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再開發지구에 事業承認을 할 적에 거기에 그 지주들이 전부 모여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건물 지분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7평도 지분에 의해서……

○**委員長 李憲九**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時間은 이 公平洞과 平倉洞 땅에 대한 質疑을 하는 중이니까 가격결정에 대한 이런 다른 얘기는 다음 討議時間이 충분히 있으니까 관계관을 다 보내고 나서 다시 우리 委員들끼리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芮相浩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격문제라든가 또는 이것이 建築許可가 합법적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다같이 공동 참여하는 뜻에서 再開發 事業에 같이 공동 참여를 해 가지고 1.7평에 대한 지분이, 가령 지금 현재 5평 남았다고 하면 5평 팔자 이겁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것은 저희 討議時間에 할 얘기입니다.

質疑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質疑없으면 質疑終結을 宣布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審査를 위하여 현지 調査를 하기 위하여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답사를 한 번 해보야죠. 停會를 宣布하는데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시까지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16時5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91年度 共有財産 管理計劃變更審査 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芮相浩委員님 말씀하세요.

○**芮相浩委員** 우리 다같이 더운데 시원한 바람도 쐬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지만 따로 의논도 해야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23일에 모여서 綜合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公平洞에 대한 시가를 알아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 그 시가를 조사하는 것은 洪委員님한테 일임해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玄孝善委員 말씀하세요.

○**玄孝善委員**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賣却하는 조건부로 시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좀 더 法的인 문제도 알아보고 해서 23일에 결론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個人財産이라면 기본대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좀 더 각자 研究를 해서 23일날 결론은 지을 수 없더라도 일단은 法的인 문제를 알아보고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다른 委員님들은 의견 없으세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田委員님 말씀하세요.

○**田永泰委員** 예, 저도 玄孝善委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하여간 오늘 더운데 質疑도 여러 委員님들이 충분히 하셨고 현지를 다녀오시는 열성과 성의를 다하신데 대해서 委員長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芮委員님께서도 시가를 충분히 조사해서 23일날 다시 재론하자는 말씀이셨고 玄委員님도 역시 이것을 法的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를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23일에 다시 續開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委員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委員님 말씀하세요.

○**玄孝善委員** 세검정 건수 말이죠. 그 두 가지를 23일에 꼭 한데 묶어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憲九 玄委員長님! 그것은 말이죠. 이번 회기 안에 가부간의 보고를 드려야 될 義務事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平倉洞 件에 대해서는 玄委員長이 시가 조사를 충분히 해주시고 公平洞 問題는 洪委員長이 시가 조사를 하되 복덕방 위치와 주인 성명, 상호까지 메모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日 14時에 다시 續開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時57分 散會)

○出席委員 6名

李 憲 九	田 永 泰	芮 相 浩
千 相 旭	洪 承 台	玄 孝 善

○關係公務員

財 務 局 長	許 萬 攝
財 務 課 長	鄭 泰 武
地 政 係 長	姜 堯 遠